

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운영지침 (2020)

1. 정의

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이란 대한심폐소생협회(KACPR)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.

2. 신청과 지정

- 1)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 (대한심폐소생협회 양식)의 요건을 준수하여 BLS 위원회에 제출하며, BLS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.
- 2)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신청 시 Director는 유효한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(또는, AHA BLS Instructor)로서 'KACPR 일반인 심화과정(이하, KACPR 일반인 교육과정)'의 교육경력이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.
- 3) Director와 Coordinator는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자여야 한다.
- 4) Director는 Coordinator를 겸할 수 있다. 겸하지 않은 경우에 Coordinator는 비서(일반인)를 포함할 수 있다.
- 5)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에는 상주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(또는, AHA BLS Instructor 로 같음할 수 있음)가 최소 3명 이상 이어야 한다. 교육기관 승인 후 상주인원이 미 충족되는 경우 상주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를 6개월 이내 배출해야 한다.

3. 관리 및 감독

Training Center(이하, TC)는 대한심폐소생협회이며 TC는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을 관리 및 감독한다.

4. 교육기관 운영

- 1) 교육기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Director와 Coordinator를 두어야 한다.
- 2) 교육기관의 명칭과 Director, Coordinator 변경 시 기관 최고 책임자(예: 병원장, 총장)의 변경 요청 공문과 재직증명서를 대한심폐소생협회로 발송한다. (단, Coordinator 변경은 TS Director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 형식도 가능하다)
- 3) 소속된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를 관리한다.
- 4) 소속된 교육생을 관리한다.
- 5) 교육기관 운영의 인력, 장비, 기구, 장소 기준은 대한심폐소생협회 기준을 준수하여야

한다. 기준 준수 유무는 BLS 위원회의 현장실사(교육기관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위한 첫 번째 교육운영 또는 기존 일반인 & 의료인 교육기관의 일반인 교육 실태 확인)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- 6) 교육과정의 등록비, 강사비, 장비 등에 관련된 비용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정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며, TS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.
- 7) 교육과정의 등록비 입금계좌는 법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.

5. 소속 Instructor 관리

- 1) 소속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는 자격이 유효해야 하며, 2년 동안 4회 이상 'KACPR 일반인 교육과정'에 강사로 참여해야 한다.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는 강사자격이 만료된다.
- 2) 교육기관은 소속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가 2년 동안 4회 이상 'KACPR 일반인 교육과정'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. 단, 군복무, 질병, 임신 및 육아,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기간은 최대 만 4년으로 한다
- 3) 소속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에게 유효만료기간 3개월 전에 교육실적을 통보하여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
6. 소속 교육생 관리

- 1) 소속 교육생이란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, 교육과정의 합격(PASS), 불합격(FAIL)자 모두를 포함한다.
- 2) 불합격(FAIL)한 교육생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합격(PASS) 한 경우는 합격(PASS)한 교육기관의 교육생이 된다.

7.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

- 1) 교육과정은 'KACPR 일반인 교육과정'으로 시행한다.
- 2) 'KACPR 일반인 교육과정' 은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3) 교육과정은 교육 1달 전에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(www.kacpr.org)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.
- 4) 교육과정에서의 인력, 장비, 기구, 장소, 교육동영상 및 운영시간은 대한심폐소생협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5) 교육의 질관리를 위하여 매 교육 시 상주인력 1인 이상이 강사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.
- 6) 교육과정 당일에는 신청자와 참석자가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방법으로 교육생의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.
- 7) 교육과정과 교육생에 대한 문서(또는, 전자문서 포함)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문서에는 교육생 인적사항, 서명지(강사, 교육생), 설문지, 술기평가지를 포함한다.

- 8) 교육과정 후 7일 이내에 TC에 보고서(대한심폐소생협회 양식)를 제출한다.
- 9) 교육과정 합격생이 교육기관(TS) 또는 대한심폐소생협회를 통해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8.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

- 1) 교육기관이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거나, 교육실적이 미비할 경우에는 1차 경고로 시정을 권고한다. 단,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교육 미션과 비전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사항인 경우 BLS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운영정지 및 지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
- 2) 교육기관이 2차 경고를 받은 경우 서면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.
- 3) 교육기관이 3차 경고를 받은 경우 교육기관 실사 후 BLS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4) 최근 2년간 교육실적이 미비하여 1차 경고 후에도 1년간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2차 교육기관 실사 후 운영정지, 3차 BLS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5) 지정 취소된 교육기관은 2년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9. 기타 진행은 운영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며 Training Center 인 대한심폐소생 협회의 운영지침을 준수한다.

10. 이 지침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2013. 09. 01 대한심폐소생협회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운영지침
/ 2017. 05. 16 1차 개정
2018. 10. 24 2차 개정
2019. 04. 01 3차 개정
2020. 05. 20 4차 개정